

조선총독부관보(朝鮮總督府官報) 제671호(號) 1914(大正 3)년 10월 27일

○ 고 시(告示)

조선총독부고시(朝鮮總督府告示) 제546호(號)

1914(大正 3)년 11월 1일부터 조선총독부 철도국(朝鮮總督府鐵道局), 철도원(鐵道院),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오사카상선주식회사(大阪商船株式會社)와 러시아의용함대기선(露國御用艦隊汽船), 러시아(露國) 각(各) 철도 간(間)에서, 하기[左記] 규칙(規則)에 의거하여 여객(旅客) 및 수하물(手荷物)의 연락운수(聯絡運輸)를 개시한다.

1914(大正 3)년 10월 27일 조선총독(朝鮮總督) 백작(伯爵)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일본·만주 연락운수 여객 및 수하물 임률규칙[日滿聯絡運輸旅客及手荷物貨率規則]

제 1 편(編) 임률적용규칙(貨率適用規則)

갑(甲) 총 칙(總則)

제 1 조(條)

·임률표(貨率表)에 기재(記載)된 각(各) 역驛 간(間)의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運送)은 이하 기재하는 특별규칙(特別規則)에 의거하여 이것을 시행한다. 단, 본(本) 규칙에 특별규정(特別規定)이 없는 경우는 아래[下]의 규정(規定)에 의거한다.

(가) 일본제국(日本帝國) 영역(領域) 내(內)에서는,

① 철도원(鐵道院)이 관리하는 일본철도(日本鐵道)는 「철도영업법 및 철도운송에 관한 제규칙[鐵道營業法及鐵道運送に關する諸規則]」에 의거한다.

② 조선총독부 철도국(朝鮮總督府鐵道局)이 관리하는 조선철도(朝鮮鐵道)는 「동(同)철도에 시행되는 법령(法令) 및 제규칙(諸規則)」에 의거한다.

(나) 남만주철도(南滿洲鐵道) 구역(區域) 내(內)에서는 「남만주철도 여객 및 수하물 운송규정[南滿洲鐵道旅客及手荷物運送規程]」에 의거한다.

(다) 오사카상선주식회사(大阪商船株式會社)의 기선(汽船)에서는 동(同)회사의 규칙(規則)에 의거한다.

(라) 러시아의용함대(露國御用艦隊) 기선(汽船)에서는 「의용함대 선객 운송규칙 및 임률규칙[義勇艦隊船客運送規則及貨率規則]」에 의거한다.

(마) 동청철도(東淸鐵道) 구역 내(內)에서는 「동청철도 여객·수하물 및 화물 운송규칙[東淸鐵道旅客手荷物及貨物運送規則]」에 의거한다.

(바) 러시아제국(露西亞帝國) 영역(領域) 내(內)에서는 러시아철도 일반법령 및 부속 제규칙[露國鐵道一般法令及附屬諸規則]에 의거한다.

제 2 조

1. 본(本) 규칙(規則) 부속(附屬) 임률표(貨率表)에서는, 여객 및 수하물의 운임은 그 운송 전체 거리에 대한 것을 나타낸다. 러시아(露國)에서 남만주(南滿洲) 및 일본행(日本行)의 것은 「루블[留·RUB]」로 계산하고, 일본 및 남만주 출발[發]의 것은 「엔(圓)」으로 계산

한다. 운임 합계(合計)에서 5코페이카[哥·Kopeck]¹⁾ 혹은 5전(錢) 미만(未滿)의 것은 이것을 5코페이카 또는 5전으로 절상(切上)해야 한다.

2. 러시아철도(露國鐵道)의 각(各) 역(驛)에서는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 발매(發賣) 때 러시아적십자사[露國赤十字社]를 위해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 1매당(枚當) 5코페이카를 징수(徵收)한다.
3. 임률표(賃率表)에 제시(提示)된 1, 2, 3등(等)의 임금(賃金) 중(中)에는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의 제작비[調製費] 20코페이카 또는 20전(錢)을 포함한다.

제 3 조

·본(本) 규칙(規則)의 실시변경(實施變更) 및 증보(增補) 등에 관한 고시(告示)는 일본[日]·만주[滿]·러시아[露] 교통사무관리자(交通事務管理者)인 「러시아철도국제운수사무국[露國鐵道國際運輸事務局]」의 요청(要請)에 의해 관계 운송업자는 하기[左記] 지면[紙上]에 이것을 게재(掲載)한다.

- ①철도원(鐵道院) 및 조선철도(朝鮮鐵道)는 「관보(官報)」
- ②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는 「만주일일신문(滿洲日日新聞)」
- ③오사카상선주식회사(大阪商船株式會社)는 「오사카아사히신문(大阪朝日新聞)」
- ④동청철도(東淸鐵道)는 「러시아 각 철도운임규칙집(露國各鐵道運賃規則集)」
- ⑤러시아(露國) 각 철도 및 러시아의용함대(露國御用艦隊)는 「러시아 각 철도운임규칙집(露國各鐵道運賃規則集)」

을(乙) 특별규칙(特別規則)

제1 여객운송(旅客運送)

시각표(時刻表)

제 4 조

·여객운송은 본 교통(交通)의 각(各) 역(驛)에 정시(定時)에 게시(揭示)하는 철도(鐵道) 및 기선(汽船) 시각표에 의해 이것을 시행한다.

승차·선권(乘車船券)

제 5 조

1. 본(本) 연락운수(聯絡運輸)를 위해 발매(發賣)하는 승차·선권(乘車船券)은 모두 책자형(冊子形)에 의거한다.
2.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의 각 등급의 색(色) 구분은 아래[左]와 같다.
 - 1등 황색(黃色)
 - 2등 녹색(綠色)
 - 3등 갈색(褐色)

1) 역자: 1코페이카는 1루블[留·RUB]의 1/100.

3.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는 그 표지(表紙) 및 각 장[葉]에 압출인(押出印)이 있는 것으로서, 이것을 발매하는 철도명(鐵道名) 또는 기선회사명(汽船會社名)이 날인(捺印)된 것을 요(要)한다.
4.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에 편철(編綴)해야 하는 각 구간(區間)의 승차·선권(乘車船券)은 규정양식(規定樣式)에 의거하여 이것을 제작[調製]한다.
5. ①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에는 기호(記號), 번호(番號), 출발[發]·도착[著] 역명(驛名), 등급(等級), 경유선로(經由線路), 임금(賃金), 유효기간(有效期間) 및 임률규칙(賃率規則)의 적요(摘要)를 일본[日], 러시아[露], 영국[英]의 3개(三箇) 국어(國語)로 기재(記載)해야 한다.
 ②각(各) 구간(區間) 간(間)의 승차·선권(乘車船券)은 그 구간이 속(屬)하는 국(國)의 국어(國語)로 인쇄해야 한다.

승차·선권(乘車船券)의 효력(效力)

제 6 조

1. ①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는 급행열차(急行列車) 및 보통열차(普通列車)에 대하여 이것을 발매(發賣)한다.
 ②급행열차의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를 소지(所持)하는 여객은 시각표(時刻表)에 기재된 모든 여객열차에 승차할 수 있다.
 ③급행열차의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는 1등(等)에 한정(限定)하여 이것을 발매한다. 단, 철도원(鐵道院)의 임률표(賃率表)에 특별히 기재된 구간(區間)에서는 3등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 소지자(所持者)도 별도로 급행열차권(急行列車券)을 구입(購入)하여 급행열차에 승차할 수 있다.
2. ①침대로 사용할 수 있는 번호부(番號附) 좌석(座席) 및 침대차(寢臺車) 내(內)의 좌석에 대하여는, 여객은 임률표(賃率表)에 기재된 임금(賃金) 외에 별도로 추가요금을 지불하는 것을 요한다.
 ②기타 러시아(露國)의 각[或] 철도에서는 침대로 사용할 수 있는 번호부(番號附) 좌석(座席)에 대하여 침구사용료(寢具使用料)를 포함하지 않은 임금(賃金)을 지불한 자(者)라도 별도로 요금을 지불할 때는 침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③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를 구입(購入)해야 하는 소아(小兒)로서 번호부(番號附) 좌석 또는 침대를 사용할 때는 그 요금의 전액(全額)을 지불해야 한다.
3. ①하기[左記]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를 소지(所持)한 여객은 만국침대차회사(萬國寢臺車會社)의 침대차에 승차할 수 있다.
 - (가) 「노스 익스프레스(North express)」 및 「모스크바(莫斯科·Moscow)·파리(巴里·Paris) 익스프레스(express)」에서는 「각(各) 열차(列車)에 유효(有效)」한 1등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
 - (나) ①블라디보스토크(浦鹽斯德·Vladivostok)·모스크바(莫斯科·Moscow) 간(間) 시베리

아(西伯利·Siberia) 급행열차에서는 「각 열차에 유효」한 1등 및 2등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

②전항(前項)의 경우에는 하기[左記] 추가요금(追加料金)을 지불해야 한다.

(-) 만국침대차회사(萬國寢臺車會社)가 취(取)하는, 당해(當該) 회사(會社)의 임률 규칙(賃率規則)에 규정(規定)하고 있는 특별 추가요금

(-) 하기[左記]의 급행요금(急行料金) 차액(差額)

구 간(區間)	승차권(乘車券) 1매(枚)에 대한 추가요금(追加料金)					
	급행열차(急行列車)		블라디보스토크(浦鹽斯德·Vladivostok)·모스크바(莫斯科·Moscow) 간(間) 시베리아(西伯利·Siberia) 급행열차			
	1 등(等)		2 등		3 등	
	대인(大人)	소아(小兒)	대인	소아	대인	소아
	루블 [留·RUB]	루블 [留·RUB]	루블 [留·RUB]	루블 [留·RUB]	루블 [留·RUB]	루블 [留·RUB]
페트로그라드(Petrograd) ²⁾ 엘즈보로 간(間)	10·90	2·73	—	—	—	—
소르츠야소 알렉산드 간(間)	1·90	0·48	—	—	—	—
모스크바(莫斯科·Moscow) 알렉산드 간(間)	15·60	3·90	—	—	—	—
모스크바 소르츠야소 간(間)	13·70	3·43	—	—	—	—
이르쿠츠크(Irkutsk) 모스크바 간(間)	—	—	28·35	7·09	12·65	3·16

4. 제2항(項) 및 제3항의 규정에 준거(準據)하여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에 다음 사항(事項)을 인쇄(印刷)한다.

(가) 급행열차(急行列車)에 대한 1등 및 2등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에는

『「익스프레스(express)」를 제외한 각(各) 열차에 유효, 「익스프레스(express)」 또는 침대차에 승차하거나 번호부(番號附) 좌석(座席) 및 침구(寢具)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특별추가요금(特別追加料金)을 지불해야 한다.』

(나) 보통열차(普通列車)에 대한 2등 및 3등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에는

『보통열차에 유효, 침대차에 승차하거나 번호부(番號附) 좌석 및 침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특별추가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5. ①하기[左記]의 구간(區間)에 운수(運輸)하는 급행열차 또는 블라디보스토크(浦鹽斯德·

2) 역자: 러시아 연방의 발트 해 연안에 있는, 러시아 제2의 도시이며 제1의 무역항이다. 1703년 포트르 1세가 서구 문화를 수입하는 창구 역할을 하기 위하여 페트로파블로프스크 요새를 건설한 것이 시(市)의 기원이다. 1712년 수도가 된 이후 도시 계획에 의해 건설이 진행되어 18세기 후반에는 러시아 최대의 무역항이 되었다. 1851년에는 모스크바와의 사이에 러시아 최초의 철도가 부설되었다. 1917년 2월 혁명, 10월 혁명이 이 도시에서 결행되어 세계 최초로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900일간 독일군의 공격을 막아 냈으므로 ‘영웅도시’라는 칭호를 받기도 했다. 제정(帝政) 러시아 때는 페테르스부르크라(Petersburg)는 이름으로 불렸고, 1914년 페트로그라드(Petrograd)로 개칭되었다가, 1924년 레닌의 사후 그를 기념하여 레닌그라드(Leningrad)로 명명되었다. 1991년 러시아어의 옛 이름인 상트 페테르부르크(Saint Petersburg)로 환원되었으며, 페테르부르크로 약칭하기도 한다. 환원되었다. 러시아의 관문이자 교통의 요지로 조선·석유화학·대형 기계 공장 등이 있다.

Vladivostok)·모스크바(莫斯科·Moscow) 간(間) 시베리아(西伯利·Siberia) 급행열차에서
 의 여객은 좌석을 예약(豫約)할 경우에도 공석(空席)이 있을 때에 한(限)해서 하기[左
 記]의 번호부(番號附) 좌석·침대 요금을 지불하고 위[右]의 급행열차에 승차할 수 있다.

구 간(區間)	대인(大人) 및 소아(小兒) 1명(名)당(當) 번호부(番號附) 좌석(침대)권 추가요금(追加料金)		
	국유철도 소속 침대차(침구 무)	만국침대차회사 소속 침대차(침구 함께)	
	1등(等) 또는 2등	1 등	2 등
이르쿠츠크(Irkutsk) 페트로그라드(Petrograd) 간(間) 이르쿠츠크 모스크바(莫斯科·Moscow) 간(間)	루블[留·RUB] 6·70	루블[留·RUB] 41·00	루블[留·RUB] 30·75
만주리 페트로그라드 만주리 모스크바 간(間)	7·75	52·40 52·35	39·30 39·30
하얼빈(哈爾濱) 페트로그라 하얼빈 모스크바 간(間)	9·85	59·60 59·55	44·70 44·70
블라디보스토크(浦鹽斯德·Vladivostok) 페트로그라드 블라디보스토크 모스크바 간(間)	10·75	65·30	49·00
하얼빈 이르쿠츠크 간(間)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 간(間)	4·80 5·70	18·60 24·35	13·95 18·25

② 블라디보스토크(浦鹽斯德·Vladivostok)＝츠라＝·모스크바(莫斯科·Moscow) 간(間) 및
 블라디보스토크＝쿤구르(Kungur)＝페트로그라드(Petrograd) 간(間)에서 국유철도(國有
 鐵道) 소속(所屬) 침대차의 침구(寢具)의 사용료(使用料) 및 교환(交換)에 대한 요금은
 각각 1루블[留·RUB]로 한다. 침구는 3일 밤마다 이것을 교환한다.

③ 시베리아(西伯利·Siberia) 급행열차(急行列車) 좌석의 주문(注文)은 하기[左記] 승차·선
 권 책자(乘車船券冊子) 발매소(發賣所)에서 수시(隨時)로 이것을 취급(取扱)한다.

가. ① 모스코프스코, 쿠르스카야(Kurskaja)철도 모스크바역(驛)

② 니콜라예프스크철도(Nikolaevsk鐵道) 페트로그라드역(Petrograd驛)

③ 자바이칼철도(後貝加爾·Zabaikal鐵道) 이르쿠츠크역(Irkutsk驛)

나. 동청철도(東清鐵道) 하얼빈시역(哈爾濱市驛)

다. 동청철도(東清鐵道) 블라디보스토크(浦鹽斯德·Vladivostok) 대리점(代理店)

라. 만국침대차회사(萬國寢臺車會社) 각(各) 대리점

마. 철도원 운수국(鐵道院 運輸局)(도쿄[東京])

바. 오사카상선주식회사(大阪商船株式會社) 각 대리점

사. 러시아의용함대(露國義勇艦隊) 블라디보스토크(浦鹽斯德·Vladivostok), 쓰루가(敦
 賀), 나가사키(長崎) 각 대리점

6. ①번호부(番號附) 좌석(座席) 및 차실(車室)의 주문(注文)에 대하여 관계(關係) 출발역[發驛] 및 각(各) 대리점(代理店)은 임률규칙(賃率規則)에 의하여 특별요금(特別料金)을 징수(徵收)한다.
 ②좌석주문(座席注文)에 관하여 페트로그라드(Petrograd), 모스크바(莫斯科·Moscow), 이르쿠츠크(Irkutsk), 하얼빈(哈爾濱) 또는 블라디보스토크(浦鹽斯德·Vladivostok)로 전보(電報)를 발송(發送)하였을 때는 그 실비(實費)를 여객에게서 징수한다.
7. ①동청철도(東淸鐵道), 남만주철도(南滿洲鐵道) 및 조선철도(朝鮮鐵道)의 급행열차 또는 기선(汽船)에서의 번호부(番號附) 좌석 또는 침대를 예약(豫約)하고자 하는 자(者)는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 구입(購入) 때 이것을 주문할 수 있다.
 ②위[右]의 주문에 관하여 전보를 발송하였을 때는 그 실비를 여객에게서 징수한다.
8.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는 발매(發賣) 역(驛)에서 천공기계(穿孔機械)로 발매 월일(月日)을 기입(記入)하지 않은 것은 무효(無效)로 한다. 위[右]의 월일은, 러시아철도(露國鐵道)의 각(各) 역(驛)에서는 러시아역(露曆)을 사용하고,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 철도원(鐵道院) 및 조선철도(朝鮮鐵道)의 각 역(驛) 및 일본(日本)의 항(港)에서는 신력(新曆)을 사용한다. 자정[夜半]에 발차해야 하는 열차에 대하여 발매하는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에는 익일부(翌日附) 인(印)을 날인(捺印)한다.
9.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의 유효기간(有效期間)은 60일(日)로 하고, 이것을 당해(當該) 책자면(冊子面)에 기재한다. 기간은 최종일의 자정[夜半]으로 만료(滿了)한다.
10.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의 유효기간의 계산에는, 그 발매일(發賣日)은 전일(全日)로 계산한다.

여행(旅行)의 중단(中斷)

제 7 조

1. ①여행의 중단은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의 각 권(券)에 기재된, 출발에서 도착까지[終始]의 각(各) 역(驛)에서 이것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여행의 중단에 부수(附隨)하는, 역장(驛長)으로부터 어떠한 증명(證明)을 받을 필요는 없다.
 ②여객은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의 유효구역(有效區域) 내에서 하기[左記] 각 역(驛)에 하차(下車)하여 여행을 중단할 수 있다.
 - 러시아(露國), 동청, 남만주 철도에서는 열차 출발·도착시각표[列車發着時刻表]에 의거하여 정차(停車)하는 각(各) 역(驛)
 - 철도원(鐵道院) 및 조선철도에서는 동(同)시각표 중에 지정(指定)하고 있는 특정(特定) 하차역(下車驛)
- ③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의 각(各) 권(券)에 기재된 출발에서 도착까지[終始]의 각 역 이외의 역에 하차하고자 할 경우는 하차 후 즉시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를 역장(驛長)에게 제출(提出)하여 상당(相當)하는 증명(證明)을 받아야 한다. 이 수속(手續)을 하지 않을 때는, 하차역(下車驛)에서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에 기재된

다음 역(驛)까지의 승차권(乘車券)은 그 효력(效力)을 상실(喪失)한다.

2. 여행중단 후(後)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에 기재된 유효기간(有效期間) 내(內)에서 재차 여행을 계속하고자 하는 자(者)는 러시아(露國), 동청 및 남만주 철도의 구역 내(內)에서는 최소(最少) 발차(發車) 10분(分) 이전에 그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를 매표소(賣票所)에 제출하여 승차해야 할 열차 번호(番號) 및 월일(月日)의 기입(記入)을 받아야 한다.
3.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의 유효기간 내(內)에서는 여행중단 시간에 제한을 부기(附記)하지 않는다. 여행중단 후(後) 재차 여행을 계속하는 여객은, 번호부(番號附) 좌석 또는 침대의 사용에 대하여는 다시 특별추가요금(特別追加料金)을 지불해야 한다.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 및 철도원(鐵道院)의 급행열차 및 장춘(長春)·부산(釜山) 간(間) 조선[鮮]·만주[滿] 직통급행열차(直通急行列車)에 재차 계속 승차[乘繼]를 하고자 할 때는 다시 급행열차권(急行列車券)을 구입할 것을 요(要)한다.

소아(小兒)의 승행(乘行)

제 8 조

- (가) 만(滿)5세까지의 소아로서 특별히 좌석을 사용하고자 하지 않는 자는 무임(無賃)으로 한다.
- (나) 만5세부터 만10세까지의 소아 및 특별히 좌석을 사용하는 만5세까지의 소아는 할인(割引)된 소아용(小兒用)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에 의거하여 이것을 운송한다. 이 경우에는 대인용(大人用)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에 편철(編綴)되어 있는 소아용 조사권(調査券)의 오른쪽[右方] 반[半部]을 절단(切斷)하고, 또 동(同)책자의 표지(表紙) 및 승차·선권(乘車船券)의 각 편(片)에 소아「детская」「child」라는 인장(印章)을 날인(捺印)해야 한다.
- (다) 만10세를 초과하는 소아에 대하여는 할인을 하지 않는다.

우등차(優等車)로의 환승(換乘) 및 보통열차(普通列車)에서 급행열차(急行列車)로의 환승

제 9 조

- 여객은 열등차에서 우등차로 환승 또는 보통열차에서 급행열차로 환승하고자 할 때는 그 철도의 규칙(規則)에 따라 환승역(換乘驛)에서 계산(計算)하여 임금(賃金)의 차액(差額)을 지불해야 한다.

승차·선권(乘車船券)의 검사(檢査)

제 10 조

1. 여객은 승행(乘行) 중에 항상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를 휴대(攜帶)하여 차장(車掌) 또는 열차(列車)나 기선(汽船)에서 검사의 직무(職務)가 있는 계원(係員)의 청구(請求)가 있을 때는 이것을 제시[呈示]해야 한다.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에 편철(編

綴)된 각(各) 권(券)은 각(各) 상당(相當) 구간(區間)에서 열차 또는 기선의 계원(係員)이 이것을 절취(截取)해야 한다. 여객은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에서 각 권(券)을 직접 절취할 권리(權利)가 없다.

2.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에서 절취된 승차·선권(乘車船券)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것을 무효(無效)로 간주하고 수수(收受)한다. 단, 표지(表紙) 및 잔여(殘餘)의 승차·선권(乘車船券)을 보유(保有)하는 책자(冊子)를 제출한 경우는 이 제한(制限)에 있지 않다.
3. 여객은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 검사 때 그 계원(係員)이 이미 통과한 구간(區間)에 대한 승차·선권(乘車船券)만을 절취하도록 주의(注意)해야 한다. 만약 열차 또는 기선의 검사원(檢査員)이 아직 사용하지 않은 승차·선권(乘車船券)을 실수로 절취하였을 때, 여객은 즉시 그 승차·선권(乘車船券)의 반환(返還)을 청구한다. 동시에 철도(鐵道)에서는 가장 가까운 역(驛)의 역장(驛長), 기선(汽船)에서는 선장(船長)에게 그 취지(趣旨)를 신고(申告)해야 한다.

제2 수하물운송(手荷物運送)

수하물(手荷物)의 정의(定義)

제 11 조

1. 수하물로서 탁송(託送)할 수 있는 물품(物品)은 여객의 자용품(自用品)으로서 가방[鞆]·밭통[櫃]·여행용 자루[囊]·모자상자(帽子箱子)·상자[箱] 등으로서 포장(包裝)된 것에 한정(限定)한다.
2. ①기타(其他) 하기[左記]의 물품은 여행용품(旅行用品)으로서 수하물로 취급(取扱)하고, 규정중량(規定重量)까지는 무임(無賃)으로 한다.
 - (가) 제(諸) 병자(病者) 및 불구자(不具者)가 휴대(攜帶)하는 운동의자(運動椅子) 및 차량부속의자(車輛附屬椅子), 그리고 여객이 동반(同伴)하는 소아용(小兒用) 수레[車]
 - (나) 상관원(商館員)이 휴대하는 상품견본(商品見本)으로서 그 포장(包裝) 상태에 의하여 견본인 것을 인정(認定)할 수 있는 물품(物品)
 - (다) 상자[箱]에 들어가 있거나 기타(其他) 포장(包裝)이 있는 휴대악기(攜帶樂器)
 - (라) 측량기계(測量器械) 및 직공용구(職工用具)
- ②단, 이들 물품[(가)에서 (라)까지 기재(記載)]이 그 수량에 의하여 실제 여객의 자용품(自用品)으로서 상품(商品)이 되지 않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연소(燃燒)하기 쉬운 물품(物品), 폭발물(爆發物), 강력(強力)한 산화류(酸化類), 유동물(流動物)을 포함하는 하물(荷物), 탄약(彈藥)이 장전(裝填)된 총기(銃器) 및 운송금지품(運送禁制品) 또는 특별조건(特別條件)에 의하여 화물(貨物)로서만 운송하는 물품은 수하물로서 취급을 하지 않는다.
4. 금괴(金塊), 은괴(銀塊), 백금괴(白金塊), 지폐(紙幣), 화폐(貨幣), 유가증권(有價證券), 증서류(證書類), 보석(寶石), 진주(珍珠), 기타 고가품(高價品), 미술품(美術品) 예를 들어 회화(繪畫), 미술적(美術的) 주물(鑄物), 골동품(骨董品) 등은 수하물로서 취급을 하지 않는다.

수하물(手荷物)의 포장(包裝)

제 12 조

·철도(鐵道) 또는 기선(汽船) 회사(會社)는 불완전(不完全)한 포장을 한 수하물의 탁송(託送)을 거절(拒絶)할 권리가 있다. 수하물에 이전 첨부(貼付)한 우편(郵便) 또는 철도의 첩지(帖紙)가 있을 때는 모두 이것을 제거(除去)해야 한다.

수하물(手荷物)의 탁송(託送)

제 13 조

1. (가) 수하물은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의 제시[呈示]에 의하여 이것을 접수(接受)하고, 동(同)책자의 표지(表紙)에 기재(記載)되어 있는 도착 역[着驛] 앞으로 발송한다.
(나) 수하물은 여행을 중단할 수 있는 중간 역(驛)에서도 임률표(賃率表)에 수하물 운임이 정(定)해져있는 역(驛) 앞으로 그 탁송을 접수(接受)할 수 있다.
2. ①보통임금(普通賃金)을 지불한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 1책(壹冊)마다 그 운송 전체 거리에 대하여 수하물 25「kg」을 무임(無賃)으로 운송한다. 할인(割引)되는 소아(만5세부터 만10세까지)용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에 대하여는 수하물 12「kg」을 무임으로 운송한다.
②위[右]에 규정(規定)한 수하물의 무임운송(無賃運送)은 1회(回)에 한(限)하여 이것을 접수한다.

비 고(備考)

1. ①캐나다(加奈太) 및 시베리아(西伯利·Siberia) 경유(經由) 세계주유(世界周遊) 여객 운송(旅客運送)에 의하여 여행하는 여객을 위해 본(本) 연락운수 승차·선권 책자(聯絡運輸乘車船券冊子)를 발매(發賣)한 경우에는 「페트로그라드(Petrograd)」 또는 모스크바(莫斯科·Moscow)와 극동(極東)을 연락(聯絡)하는 제항(諸港) 간(間) 대인(大人) 1인(人)에 대하여 수하물 50「kg」, 소아(小兒) 1인에 대하여 수하물 25「kg」을 무임(無賃)으로 운송한다.
②전항(前項)의 경우에는 승차·선권 책자면(乘車船券冊子面)에 기재(記載)된 수하물 무임운송(無賃運送) 한도(대인 25「kg」, 소아 12「kg」)를 수기(手記)에 의하여 정정(訂正)할 것을 요(要)한다.
2. 여객이 시베리아 경유여객 국제운송 승차·선권 책자[西伯利經由旅客國際運送乘車船券冊子]를 제시[呈示]하여 수하물을 탁송(託送)할 경우에는 1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 당(當) 대인(大人) 1인(人)에 대하여 수하물 50「kg」, 소아 1인에 대하여 25「kg」을 무임(無賃)으로 운송한다.
3. 수하물의 운송에 대하여는 그 중량(重量) 5「kg」마다 임률표(賃率表)에 기재된 운임을 징수한다. 운임 계산 때 중량 5「kg」 미만(未滿)의 우수리[端數]는 이것을 5「kg」으로 절상(切上)한다. 또 운임 합계에서 5전(錢) 또는 5코페이카[哥·Kopeck] 미만의 우수리[端

數]는 이것을 5진 또는 5코페이카로 절상해야 한다.

4. 수하물의 운입은 탁송(託送) 때 이것을 지불해야 한다.
5. ①탁송을 접수(接受)한 수하물에 대하여는 수하물증서(手荷物證書)를 발행(發行)한다. 수하물증서에는 수하물의 개수(箇數), 중량(重量), 운임(運賃), 출발·도착[發著] 역(驛)과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의 등급(等級) 및 번호(番號)를 기입해야 한다.
②여객은 수하물증서를 수령(受領)할 때, 그 기재사항(記載事項) 각각의 오류(誤謬)의 유무(有無)에 주의(注意)해야 한다.
6. 수하물증서의 발행 월일(月日)은, 철도원(鐵道院), 조선철도(朝鮮鐵道),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 및 기선에서는 신력(新曆)으로 이것을 기입하고, 러시아철도(露國鐵道)에 서는 러시아역(露曆)으로 이것을 기입한다.

휴대수하물(携帶手荷物)

제 14 조

1. 여객은 휴대에 편리하여 선반에 또는 의자 밑에 두거나 고리[鉤]에 걸 수 있는 소형(小形) 물품을 객차(客車) 내(內)에 휴대할 수 있다. 단, 다른 여객을 방해하지 않고 또 세관(稅關), 세무서[收稅署] 혹은 경찰(警察)의 규칙(規則)에 위반(違反)되지 않는 경우에 한정(限定)한다. 객차 내에 휴대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하물증서(手荷物證書)를 발행받지 않은 여객은 직접 이것을 보관(保管)해야 한다. 휴대수하물(携帶手荷物)은 여객이 점(占)할 좌석의 상하(上下)에 한(限)하여 이것을 둘 수 있다.
2. ①세금(稅金)이 부과(賦課)되어야 하는 물품(物品), 운송금제품(運送金制品), 위험품(危險品) 예를 들면 탄약(彈藥)이 장전(裝填)된 총기(銃器), 연소(燃燒)하기 쉬운 물품(物品), 강력(強力)한 산화류(酸化類), 유동물(流動物) 등 및 그 발산(發散)하는 악취(惡臭) 또는 기타 성질(性質)에 의하여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不快感)을 주는 물품 및 모든 동물(動物: 새장 안[籠入]의 작은 새는 제외)은 이것을 객차 내(內)에 휴대할 수 없다.
②러시아철도(露國鐵道) 및 동청철도(東淸鐵道)에서는 여객 1인당(一人當) 3푼트(funt)³⁾ 이내의 화약(火藥)을 객차(客車) 내(內)에 휴대할 수 있다. 단, 블리크(blik)⁴⁾통[罐] 또는 밀폐(密閉)된 금속제(金屬製) 화약용기(火藥容器)에 들어간 것에 한정한다.
③러시아철도(露國鐵道) 및 동청철도(東淸鐵道)에서는, 여객은 객차(客車) 내에 실내 수조류(室內獸鳥類)를 휴대(携帶)할 수 있다. 단, 그때마다 역장(驛長)의 승인(承認)을 받고, 또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만약 동승자(同乘者) 중 1인(人)이라도 청구(請求)하는 것이 있을 때는, 이들 수조류는 수하물차(手荷物車)로 옮겨 탑재(搭載)해야 한다. 실내 수조류를 객차 내에 휴대할 경우에는 특별임률(特別賃率)에 의거하는 요금을 징수하고, 여객이 실내 수조류를 객차 내에 휴대하려는 취지(趣旨)를 기입한 영수증(領收證) 또는 특별권(特別券)을 발행한다. 철도원(鐵道院)·조선철도(朝鮮鐵道) 및 남만주철도(南滿洲鐵道)에서는 모두 수조류를 객차 내에 휴대할 수

3) 역자 : 러시아 중량단위의 하나. 1푼트는 409.6g

4) 역자 : 생철, 양철을 말한다.

없다.

수하물(手荷物)의 인도(引渡)

제 15 조

1. 수하물은 수하물증서(手荷物證書)에 기재된 도착[著] 역(驛)·항(港)에서 동(同)증서와 교환(交換)하여 이것을 인도해야 한다.
2. 수하물 인도의 경우, 철도(鐵道) 또는 기선(汽船) 회사(會社)는 여객의 본인(本人) 여부(與否)를 조사[取調]할 의무(義務)가 없으며, 증서 제출자에게 수하물을 인도하고, 그 인도 후에는 하등(何等)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 여객이 수하물증서를 분실(紛失)한 경우에는, 철도는 여객으로부터 수취증(收取證)을 제출토록 하고, 또 수하물 수령(受領)의 권리가 있는 것에 따른 증명(證明)을 요구한다. 만약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확실한 담보(擔保)를 요구한 후에 수하물을 인도해야 한다.
3. ①수하물은 그 지정(指定)한 도착[著] 역(驛)·항(港)에서 이것을 인도한다.
②여객의 희망(希望)에 따라서는 시간(時間)의 사정(事情), 세관(稅關), 세무서[收稅署] 규칙(規則), 기타 사정에서 지장(支障)이 없는 한(限) 중간 역(中間驛)에서도 이것을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여객은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를 제시[呈示]하고 수하물증서를 반납(返納)해야 한다. 단, 운임차액(運賃差額)의 반환(返還)을 청구(請求)할 수 없다.
4. ①러시아철도(露國鐵道) 및 동청철도(東淸鐵道)의 중간 역(中間驛)에서 수하물을 인도할 때는, 당해(當該) 역장(驛長)은 그 수하물증서에 「어떤 역에서 멈춘다」라고 하는 인장(印章)을 날인(捺印)해야 한다. 만약 수하물 전부(全部)를 인도할 경우에는, 수하물증서는 동역(同驛)에서 이것을 수령(受領)하고, 여객에 대하여는 그 수하물증서를 수령할 때마다 특별증서(特別證書)를 교부(交付)한다. 수하물의 일부(一部)를 인도할 경우에는 그 인도한 개수(箇數) 및 그 중량(重量)을 수하물증서에 기입하고 이것을 여객에게 반납(返納)해야 한다.
②여객이 한 번 수취(受取)한 수하물을 재차 탁송(託送)하고자 할 때는 수하물증서 또는 수하물증서와 교환하여 역장(驛長)으로부터 수취(受取)한 증서를 수하물취급소(手荷物取扱所)에 제출(提出)해야 한다. 수하물취급소는 수하물증서(이전에 수취해두었거나 또는 여객이 제출한다)에 날인(捺印)된 「어떤 역에서 멈춘다」라고 하는 인장(印章) 밑에 발송(發送)할 열차 번호(番號) 및 그 월일(月日)을 기입한 인장을 날인하고, 이것을 여객에게 반납해야 한다.
③재차 탁송하는 수하물이 최초 탁송한 경우에 비해 그 중량(重量)에 증감(增減)이 있을 때는 다시 수하물증서(手荷物證書)를 발행한다. 그 증서면(證書面)에 다시 발행한 것임을 기입해야 한다. 이 경우에 수하물의 중량이 증가하고 있을 때는 추가요금(追加料金)을 징수해야 한다.

수하물(手荷物)의 보관(保管)

제 16 조

·도착(到着) 철도(鐵道) 또는 기선(汽船) 회사(會社)가 규정(規定)하는 기한(期限) 내(內)에서 여객이 그 수하물을 인수(引受)하지 않을 때는 수하물 보관료(保管料)를 징수해야 한다.

수하물(手荷物)의 가격(價格) 및 그 인도기한(引渡期限)의 보장(保障)

제 17 조

·수하물에는 그 가격 및 인도기한의 보장을 부가(附加)하지 않는다.

수하물운송(手荷物運送)에 관한 철도(鐵道)의 책임(責任)

제 18 조

1. 수하물의 탁송(託送)을 접수(接受)한 철도는 도착역[著驛]에서 이것을 여객에게 인도할 때까지 그 운송에 따른 책임을 진다.
2. 수하물 통지서(通知書)와 함께 수하물 운송의 인계(引繼)를 접수한 철도는 그 인계와 함께 운송계약(運送契約)의 당사자(當事者)가 되어 당해(當該) 계약조항(契約條項)에 의하여 운송을 해야 한다.
3. 운송계약으로 발생(發生)하는 청구권(請求權)은 철도 상호간 구상(求償)할 경우를 제외하고, 최초 운송을 인수(引受)한 철도, 최후에 수하물 통지서(通知書)에 의하여 수하물을 수취(受取)하는 철도 또는 그 소속선로(所屬線路) 내(內)에서 손해(損害)를 발생시킨 철도에 대해서만 소송(訴訟)에 의하여 이것을 주장(主張)할 수 있다. 청구자(請求者)는 전기(前記) 철도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4. ①소송은 피고(被告)가 되어야 하는 철도본사(鐵道本社) 소재국(所在國)의 재판소(裁判所)에서 그 국(國)의 법률(法律)에 의거하여 관할권(管轄權)이 있는 자(者)에게 이것을 제기(提起)할 것을 요(要)한다. 본조(本條) 제3항(項)에서 규정(規定)하는 선택권(選擇權)은 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소멸(消滅)한다.
 ②본조(本條)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관해서는, 청구자(請求者)는 일본제국(日本帝國) 내(內)에서는 일본의 상법(商法) 및 철도영업(鐵道營業)에 관한 법령(法令)에 의존(依存)한다.
5. (가) ①이상 기재(記載)한 제(諸)규정에 기초(基礎)하는 수하물의 전부(全部) 또는 일부(一部)의 상실(喪失)에 대하여 철도(鐵道)가 그 손해배상(損害賠償)을 해야 할 때는, 남만주철도(南滿洲鐵道)는 아래[左]에 기재(記載)하는 일정(一定) 가격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을 한다.

1등여객수하물	1「kg」당(當)	7엔(圓)
2등여객수하물	1「kg」당(當)	3엔(圓) 50전(錢)
3등여객수하물	1「kg」당(當)	2엔(圓)

(나) 러시아철도(露國鐵道) 및 동청철도(東淸鐵道)에서는 아래[左]에 기재하는 일정가격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을 한다.

1등여객수하물	1「kg」당(當)	7루블[留·RUB]	30코페이카[哥·Kopeck]
2등여객수하물	1「kg」당(當)	4루블[留·RUB]	88코페이카[哥·Kopeck]
3등여객수하물	1「kg」당(當)	2루블[留·RUB]	44코페이카[哥·Kopeck]

(대) 철도원(鐵道院) 및 조선철도(朝鮮鐵道)에서는, 수하물의 상실(喪失)과 관련해서는 여객 1인에 대하여 승차·선권(乘車船券)의 등급(等級)에 구애(拘碍)받지 않고 가격 100엔(圓) 이내에 한(限)해서 그 배상을 한다.

6. 수하물을 훼손(毀損)한 경우에는, 철도는 그 수하물 가격의 감소액(減少額)에 따라 배상을 한다. 단, 그 배상액은 본조(本條)에 규정된 수하물 전부(全部) 또는 일부(一部)의 상실(喪失)에 대한 배상금(賠償金)의 최고 한도(限度)를 초과할 수 없다.
7. 어떤 이유(理由)에 의하여 수하물의 인도(引渡)를 접수(接受)하지 않은 여객은 그 수하물 증서(手荷物證書)를 제시[呈示]하여 이것에 인도를 청구(請求)한 월일(月日) 및 시각(時刻)의 기입(記入)을 청구할 수 있다.
8. 여객이 도착역[著驛]에서 수하물을 인수(引受)하지 않을 때는, 도착철도(到着鐵道)는 그 철도에 시행(施行)하는 규칙(規則)에 기초(基礎)하여 이것을 처분(處分)한다.

분실수하물(紛失手荷物)

제 19 조

1. 수하물을 탑재(搭載)해야 하는 열차 또는 기선이 도착지(到着地)에 도착한 후 10일(日)을 경과(經過)해도 아직 도착하지 않은 수하물은 이것을 분실한 것으로 간주한다.
2. ①분실수하물이 발견(發見)되었을 때는 그 소유자(所有者)의 숙소(宿所)가 분명하게 있으면 즉시 그 취지(趣旨)를 통지(通知)해야 한다.
②이 경우에서 여객은 그 통지를 접수(接受)한 날[日]부터 30일 이내에 철도(鐵道)에 대하여 발견수하물(發見手荷物)을 출발역[發驛] 또는 도착역[著驛]까지 무임(無賃)으로 운송시킬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수하물의 분실에 대하여 이전에 수령(受領)한 손해배상금(損害賠償金)은 이것을 환급(還給)할 것을 요(要)한다.
③분실수하물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이것을 수령(受領)하고자 하는 여객은 미리 자기(自己)의 숙소를 지정(指定)하여 그 취지(趣旨)를 행(行)해야 한다.

수하물(手荷物)의 세관검사(稅關檢査)

제 20 조

- ①여객은 그 소유(所有) 수하물의 세관검사에 반드시 자신(自身)이 입회(立會)할 의무가 있다. 철도(鐵道)는 여객이 본(本) 규칙을 준수(遵守)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 여객이 그 수하물의 세관검사에 입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하물 유치(留置) 등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어떠한 이의신청(異議申請)도 수리(受理)하지 않는다.

②세관검사지(稅關檢査地)는 아래[左]와 같다

러시아세관(露國稅關) 탄호이역(Tankhoy驛), 만주리역(滿洲里驛), 포그라니치나야역
(Pogranichnaya驛), 블라디보스토크역(浦鹽斯德·Vladivostok驛)
청국세관(淸國稅關) 만주리역⁵⁾, 포그라니치나야역, 다롄역(大連驛), 단둥역(安東驛)
일본세관(日本稅關) 쓰루가항(敦賀港), 모지항(門司港), 고베항(神戶港), 시모노세
키항(下關港), 나가사키항(長崎港), 단둥역 및 관부연락선(關
釜聯絡船) 내(內)

제 2 편(編) 러시아의용함대·오사카상선주식회사 및 철도원 선객운송규칙[露國御
用艦隊大阪商船株式會社及鐵道院船客運送規則]

1. ①러시아의용함대(露國御用艦隊)의 기선(汽船)은 블라디보스토크(浦鹽斯德·Vladivostok)·쓰루가(敦賀) 간(間) 및 블라디보스토크·나가사키(長崎) 간(間)을 왕복(往復)한다.
②오사카상선주식회사(大阪商船株式會社)의 기선은 쓰루가(敦賀)·블라디보스토크(浦鹽斯德·Vladivostok) 간(間) 및 고베(神戶)·시모노세키(모지[門司]), 다롄(大連) 간(間)을 왕복한다.
③철도원(鐵道院)의 기선(汽船)은 시모노세키(下關)·부산(釜山) 간(間)을 왕복한다.
2. ①『각(各) 열차(급행 및 익스프레스[Express])에 유효(有效)』한 전액(全額)을 지불한 승차·선권(乘車船券)을 소지(所持)하는 자는 1등 선객실(船客室)에서 1침대를 사용할 수 있다.
②무임으로 운송運送하는 만(滿)5세까지의 소아는 특별히 침대 또는 좌석을 사용할 수 없다.
③반액표(半額表)로 승선(乘船)하는 만5세에서 만10세까지의 소아는 2인이 1침대 또는 1좌석을 사용한다.
④보통열차(普通列車)에 대하여 유효(有效)한 승차·선권(乘車船券)을 소지하는 자는 선내(船內)에서 이것에 상당(相當)하는 좌석을 사용할 수 있다.
3. ①항해(航海) 중(中)에서의 식료(食料)는 1등 및 2등의 승차·선권(乘車船券)에 한(限)해 그 임금(賃金) 중에 포함된다.
②3등 선객(船客)은 오사카상선주식회사(大阪商船株式會社) 및 철도원(鐵道院)의 기선(汽船)에 한(限)해 식사(일본식)를 받는다.
4. 선객(船客)은 항해(航海) 중 기선회사(汽船會社)가 규정(規定)한 시간에 식당(食堂)에서 일정(一定)한 식사를 받는다.
5. 식료(食料)를 지불한 선객(船客)으로서 배 멀미[船暈] 때문에 식탁(食卓)에 갈 수 없을 때는 자실(自室)에서 구운 빵과 브리온 또는 빵과 차(茶)를 받을 수 있다. 배 멀미 이외의 질병疾病에 걸린 선객은 선장(船長)의 의견에 따라 자실에서 식사를 받을 수 있다.
6. 검역(檢疫) 또는 위생검사(衛生檢査) 때문에 기선(汽船)의 정박(碇泊) 중에서의 식료(食

5) 역자 : 원문에는 ‘만리역滿里驛’으로 되어 있다.

料)는 기선이 부담(負擔)하는 한도(限度)에 있지 않다.

7. 전액(全額)을 지불한 승차·선권(乘車船券)을 소지하는 자(者)는 임률규칙(賃率規則)에 규정한 중량에 한(限)하여 수하물의 무임운송(無賃運送)을 받을 수 있다.
8. 선객(船客)은 그 수하물을 출범(出帆) 5시간 전(前)에 기선대리점(汽船代理店)에 제출해야 한다. 위[右]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직접 그 수하물을 기선에 적재(積載)해야 한다.
9. ①수하물의 분실(紛失)에 대하여는 가격표기(價格表記)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각(各) 기선(汽船) 수하물 1개당(箇當) 20루블[留·RUB] 또는 20엔(圓) 이내의 배상금을 지불한다.
 ②철도원(鐵道院)은 시모노세키(下關)·부산(釜山) 간(間)에서 수하물의 분실에 대하여는 일본·만주·러시아 연락운수 여객 및 수하물 임률적용규칙[日滿露聯絡運輸旅客及手荷物賃率適用規則] 제18조 5.㉡에 기초(基礎)하여 배상금을 지불한다.
 ③수하물의 훼손(毀損)에 대하여는, 기선은 수하물 가격(價格)의 감소액(減少額)에 따라 배상한다. 단, 분실에 대한 배상금의 최고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④수하물을 분실한 경우에 전기(前記) 금액 이상의 배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者)는 그 수하물에 가격표기를 부가(附加)해야 한다.
 ⑤수하물의 가격표기료(價格表記料)는 표기금액 100루블[留·RUB]마다 백분(百分)의 1로 한다.

조선철도 출발 여객 및 수하물 연락운임표[朝鮮鐵道發旅客及手荷物聯絡運賃表]

출발역 및 도착역	여객운임								수하물 무임(無賃) 운송 한도 25kg 초과마다 5kg당(當)
	급행열차				보통열차				
	1등		2등		2등		3등		
	대인	소아	대인	소아	대인	소아	대인	소아	
부산에서 하기[左記]에 도착									
이르쿠츠크	엔(円) 173·90	엔(円) 83·90	엔(円) 113·35	엔(円) 53·70	엔(円) 76·50	엔(円) 37·00	엔(円) 46·90	엔(円) 20·75	엔(円) 2·18
페트로그라드									
모스크바 경유	278·40	110·05	185·30	71·75	125·30	49·25	79·45	28·90	4·01
부야츠크 경유	267·45	107·30	177·30	69·70	120·90	48·10	76·50	28·15	3·87
부예르지보로									
모스크바 경유	295·85	114·45	197·80	74·85	132·90	51·10	84·50	30·15	4·24
부야츠크 경유	284·95	111·70	189·80	72·85	128·45	50·00	81·55	29·40	4·10
리가	277·50	109·85	183·15	71·20	127·20	49·70	80·70	29·20	4·07
모스크바(모스코프스코, 쿠르스카야 철도)	264·90	106·70	179·60	69·30	119·65	47·80	75·65	27·95	3·84
모스크바(모스코프스코, 가잔스카야 철도)	260·00	105·45	171·50	68·30	118·40	47·50	74·80	27·75	3·80
바르샤바(Warszawa)	290·00	112·95	193·15	73·70	131·00	50·65	83·20	29·85	4·19
알렉산드로	295·00	114·20	196·85	74·60	132·90	51·10	84·50	30·15	4·24
그라니츠아	296·55	114·60	198·00	74·90	133·50	51·25	84·90	30·25	4·26
키예프	277·50	109·85	183·15	71·20	127·20	49·70	80·70	29·20	4·07
오데츠사	289·00	112·70	190·90	73·10	131·90	51·10	84·90	30·15	4·24
카잔	257·90	104·95	170·25	67·95	117·15	47·20	74·00	27·55	3·76
니즈니, 노브고로드Novgorod	256·85	104·65	169·60	67·80	116·50	47·00	73·55	27·40	3·75
남대문에서 하기[左記]에 도착									
이르쿠츠크	160·40	77·15	103·90	48·95	67·05	32·25	41·75	28·20	2·08
페트로그라드									
모스크바 경유	264·90	103·30	175·85	67·00	115·85	44·50	74·30	26·30	3·91
부야츠크 경유	253·95	100·55	167·85	65·00	111·45	43·40	71·35	25·60	3·77

부에르지보로										
모스크바 경유	282·45	107·70	188·35	70·15	123·45	46·40	79·35	27·55	4·14	
부야즈카 경유	271·45	104·95	180·35	68·10	119·00	45·30	76·40	26·85	4·00	
리가	264·00	103·10	173·70	66·45	117·75	44·95	75·55	26·65	3·97	
모스크바(모스코프스코, 쿠르스카야 철도)	251·40	99·95	166·15	64·55	110·20	43·10	70·50	25·25	3·74	
모스크바(모스코프스코, 가잔스카야 철도)	246·50	98·70	162·05	63·55	108·95	42·75	69·70	25·15	3·70	
바르샤바	276·50	106·20	183·70	68·95	121·55	45·90	68·10	27·25	4·09	
알렉산드로	281·50	107·45	187·40	69·90	123·45	46·40	79·35	27·55	4·14	
그라니츠아	283·05	107·85	188·55	70·20	124·05	46·95	79·75	27·70	4·16	
키에프	264·00	103·10	173·70	66·45	117·75	44·95	75·55	26·65	3·97	
오데츠사	275·50	105·95	181·45	68·40	123·45	46·40	79·35	27·95	4·14	
카잔	244·40	98·20	160·80	63·25	107·70	42·45	68·85	24·95	3·66	
니즈니, 노브고로드	243·35	97·90	160·15	63·10	107·05	42·30	68·40	24·85	3·65	
평양에서 하기[左記]에 도착										
이르쿠츠크	150·15	72·05	97·10	45·80	61·25	29·40	38·45	16·55	1·98	
페트로그라드									3·81	
모스크바 경유	254·65	98·20	169·10	63·60	110·10	41·60	71·00	24·65	3·67	
부야즈카 경유	243·70	95·45	161·05	61·60	105·70	40·50	68·05	23·95	4·04	
부에르지보로									3·90	
모스크바 경유	272·20	102·60	181·60	66·75	117·65	43·50	76·05	25·90	3·87	
부야즈카 경유	161·20	99·85	173·55	64·75	113·25	42·40	73·10	25·20	3·64	
리가	253·75	97·95	166·95	63·10	112·00	42·10	72·25	25·00	3·60	
모스크바(모스코프스코, 쿠르스카야 철도)	241·15	94·80	159·40	61·20	104·45	40·20	67·20	23·70	3·99	
모스크바(모스코프스코, 가잔스카야 철도)	236·25	93·60	155·30	60·15	103·15	39·90	66·40	23·50	4·04	
바르샤바	266·25	101·10	176·90	65·60	115·75	43·05	74·80	25·60	4·06	
알렉산드로	271·25	102·35	180·65	65·50	117·65	43·50	76·05	25·90	3·87	
그라니츠아	272·80	102·75	181·80	66·80	118·30	43·65	76·45	26·05	4·04	
키에프	253·75	97·85	166·95	63·10	112·00	42·10	72·25	25·00	3·87	
오데츠사	265·25	100·85	174·65	65·00	117·65	43·50	76·05	25·90	4·04	
카잔	234·15	92·05	154·05	59·85	101·90	39·55	65·55	23·30	3·56	
니즈니, 노브고로드	233·10	92·80	153·40	59·70	101·30	39·40	65·10	23·20	3·55	

단, 부에르지보로, 리가, 모스크바(모스코프스코, 카잔스카야철도), 알렉산드로, 그라니츠아, 키에프, 니즈니·노브고로드, 카잔 각(各) 역행(驛行) 승차·선권 책자(乘車船券冊子)는 당분간(當分間) 발매(發賣)하지 않는다.

러시아(露國) 각(各) 철도(鐵道) 제역(諸驛)에 도착하는 여객 및 수하물의 운수경로(運輸徑路)

부	만주리(滿洲里)까지의 경로(徑路)	
	조선철도선(朝鮮鐵道線) 발차(發車) 산(釜山)	
남	단둥(安東)―봉천(奉天)―장춘(長春)―하얼빈(哈爾濱)―만주리(滿洲里)	
	대문(南大門) 경성(京城)	
평	동(同) 양(平壤)	
	동(同)	
도	일본(日本)의 제(諸)역(驛)·항(港) 출발[發] (여객 및 수하물의 운입은 각 경로[徑路] 동일[同]로 한다)	
	쿄(東京) 신바시(新橋)	
쓰루가(敦賀)―블라디보스토크(浦羅斯德·Vladivostok)―포그라니치나야(Pogranichnaya)		
고베(神戸) 철도 또는	부산―단둥―봉천―장춘	
	=시모노세키(下關)= ―하얼빈=만주리	
기선에 의한다) 다렌(大連)―장춘		
요코하마(橫濱) 히라누마(平沼)		
쓰루가―블라디보스토크―포그라니치나야		

<p>히라누마(平沼) = 고베(철도 또는 =시 모 노 세 키= 부산 = 단둥 = 봉천 = 장춘 기선에 의한다) 다렌 = 장춘</p> <p>교 토(京都) 쓰루가 = 블라디보스토크 = 포그라니치나야</p>	<p>=하얼빈=만주리</p>
<p>고베(철도 또는 =시 모 노 세 키= 부산 = 단둥 = 봉천 = 장춘 기선에 의한다) 다렌 = 장춘</p> <p>오 사 카(大阪) 쓰루가 = 블라디보스토크 = 포그라니치나야</p>	<p>=하얼빈=만주리</p>
<p>고베(철도 또는 =시 모 노 세 키= 부산 = 단둥 = 봉천 = 장춘 기선에 의한다) 다렌 = 장춘</p> <p>고 베(神戸) 쓰루가 = 블라디보스토크 = 포그라니치나야</p>	<p>=하얼빈=만주리</p>
<p>고베(철도 또는 =시 모 노 세 키= 부산 = 단둥 = 봉천 = 장춘 기선에 의한다) 다렌 = 장춘</p> <p>시모노세키(下關) 또는 모지(門司) 쓰루가 = 블라디보스토크 = 포그라니치나야</p>	<p>=하얼빈=만주리</p>
<p>부산 = 단둥 = 봉천 = 장춘 다렌 = 장춘</p>	<p>=하얼빈=만주리</p>
<p>쓰 루 가(敦賀) 블라디보스토크 = 포그라니치나야 = 하얼빈 = 만주리</p>	
<p>나 가 사 키(長崎) 블라디보스토크 = 포그라니치나야</p>	
<p>시모노세키 = 쓰루가 = 블라디보스토크 = 포그라니치나야 모지 = 부산 = 단둥 = 봉천 = 장춘 모지 = 다렌 = 장춘</p>	<p>=하얼빈=만주리</p>
<p>만주리(滿洲里)에서 도착역[著驛]까지의 경로(徑路) 이르쿠츠크(Irkutsk) 만주리 페트로그라드(Petrograd) 만주리 = 이르쿠츠크 = 체리야빈스크(Chelyabinsk) = 파트라키 = 툴라(Tula) = 모스크바(莫斯科·Moscow)</p>	
<p>동(同) 만주리 = 이르쿠츠크 = 옴스크(Omsk) = *크로무시노 = 튜멘(Tyumen) = 예카테린부르크(Ekaterinburg) = 쿤구르 *체 리 야 빈 스크 (Kungur) = 바츨카(Vatska) = 볼로그다(Vologda)</p>	
<p>부엘지보로 만주리 = 이르쿠츠크 = 체리야빈스크 = 파트라키 = 툴라 = 모스크바 = 페트로그라드 *크로무시노 = 튜멘</p>	
<p>동(同) 만주리 = 이르쿠츠크 = 옴스크 = *체 리 야 빈 스크 = 예카테린부르크 = 쿤구르 = 바츨카 = 볼로그다 = 페트로 그라드</p>	

리가(Ryga)	만주리=이르쿠츠크=첼리아빈스크=파트라키=틀라=모스크바=레지츠아=크레이츠부르그
모스크바(모스크프스코, 쿠르스카야 철도)	만주리=이르쿠츠크=첼리아빈스크=파트라키=츠라
모스크바(모스크프스코, 카잔스카야 철도)	만주리=이르쿠츠크=첼리아빈스크=파트라키=르사예프카=리아잔
알렉산드로	만주리=이르쿠츠크=첼리아빈스크=파트라키=츠라=모스크바=브레스토=바르샤바 *바르샤바=페트로코프
그라니츠아	만주리=이르쿠츠크=첼리아빈스크=파트라키=츠라=모스크바=브레스토= *루코프=이반고로드
키에프	만주리=이르쿠츠크=첼리아빈스크=파트라키=츠라=모스크바=브리안스크=나우리아
오데츠사	만주리=이르쿠츠크=첼리아빈스크=파트라키=츠라=모스크바=브리안스크=나우리아=키에프
카잔	만주리=이르쿠츠크=첼리아빈스크=파트라키=잉사=르사예프카
니즈니·노브그라드	만주리=이르쿠츠크=첼리아빈스크=파트라키=잉사=르사예프카

*여객은 수하물 탁송(託送) 때의 운송해야 할 경로(2경로의 1)를 지정(指定)해야 하고, 만약 여객이 경로를 지정하지 않을 때
는 철도는 편의(便宜)한 경로에 의하여 운송한다.